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7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08일  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원중, 김원태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이종태, 최민규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1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정비구역 인접지 추가편입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이 개정되었음.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0%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 정형화에 한계가 있으며, 잔여지 발생으로 인한 비효율적 토지이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이에 기존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범위를 10%에서 20%로 확대하여 계획적 정비 유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함(안 제6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3항 중 “110”을 “12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,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<u>110</u>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20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인접지 추가편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의 100분의 120이하까지 추가편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에도, 현행 조례는 100분의 110이하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의 계획적 정비 유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,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